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년 12월 1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11월 10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1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2년 12월 1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경제국장 한만석)

가. 제안이유

-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. 1. 4. 제정, 2022. 7. 5. 시행됨에 따라 금천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·이행에 대해 규정(안 제3조)
- 추진계획의 수립·변경 및 추진상황의 점검(안 제4조 및 제5조)
-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·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부터 제1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파괴, 공동체 붕괴, 양극화 심화 등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게 대두되는 “지속가능발전” 성장 패러다임에 발맞춰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월 4일 「지속가능발전 기본법」이 제정되어 2022. 7월 5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
- 지속가능발전 정책은 1992년 브라질 리우회담(유엔환경개발 회의 UNCED)의 “의제 21”로 지속가능발전이 채택된 이후,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국가지속가능 발전을 핵심 전략 과제로 설정하고 국내에서도 정책 추진에 대한 노력이 확산되어 가는 상황임.
- 이에 본 조례안은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보다 나은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구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 따른 도시 경쟁력 강화와 균형적인 세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정한 조례안 이라고 판단되나,
-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운영이 핵심인 만큼, 자질있는 해당 전문가를 위촉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,
-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분과위원회 무분별한 남발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